# 증평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 2021. 12. 22 ]

일부개정 2024. 2. 27 의회규칙 제42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근무기강의 확립) 증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엄정한 근무기강의 확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 ② 근무상황부는 의회사무과에서 관리한다.
  - 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 ④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7〉
-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 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증평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2. 27〉
  - 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 시간의 사용에 대하여는 그 근무상황을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여 관리한다.〈신설 2024. 2. 27〉

#### 증평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 제5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 청서에 의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7〉
-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2024. 2. 27 의회규칙 제42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별지 제1호서식]

#### 근무상황부

(부서: 직급: 성명: )

종별	기	간 또는 일	시		연락처	결 재			
	부터	까지	일수 • 시간	사유	- · · · (전화번호)				

※ 비 고

- 1. 종별은 휴가(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지각・조퇴・외출・출장 및 결근 등을 기재함
- 2. 지각·조퇴 및 외출의 경우 질병·부상 등 그 사유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 이 경우 "부터"란은 일·시·분을, "까지"란은 시·분을 기재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후에 정정하여 결재권자에게 보고함
- 3. 종별이 연가인 경우 사유란은 기재하지 않음

■ 증평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신설 2024. 2. 27〉

#### 근무상황부(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

(부서 : 직급 : 성명 : )

사	용기간 또는	일시	내 용	연락처			
부터	까지	일수ㆍ시간	네 <del>ㅎ</del>	(전화번호)			

※ 비 고

근무상황부 기재 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또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 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시간 사용을 승인받은 증빙서류를 함께 첨부하여 관리함

#### [별지 제2호서식]

#### 근무상황카드

(부서 : 직급 : 성명 : ) (앞쪽) 부서명 : 일 1 3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월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 [별지 제3호서식]

## 출장신청서

20 . \_ . .

결							협						
재							조						
다음과 같이 출장을 명함													
	직급		성명		출장목적		출장기간		•	출장지	서명 또는 닐		날인
						(		)부터 )까지					
						(		) 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		)부터					
						(		)까지					
이동사항 :													
	여 비						정		산				